

2026년 하반기 구로구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기간연장)

우리 구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지원사업)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기간 연장 공고합니다.

2026. 9. 18.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2026년 하반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공고일 ~ 2026. 12월

다. 사업대상: 구로구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 12개소](#)

※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11월 초 예정)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공 가능한 업소

라. 지원금액: 업소당 최대 100만원 이내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10% 및 부가가치세 등은 자부담

(예) 총 사업비용이 110만원(공급가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100만원의 90%(90만원) 지원

(예) 총 사업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 중 최대 지원가능액 100만원 이내 지원

마. 지원내용: 시설개선 비용 90% 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일반음식점 시설개선비 지원 (업소당 최대 100만원 한도)	· 조리장(바닥 포함) 노후설비 보수 및 교체 · 환풍기, 후드, 덕트 등 환기시설 교체 · 조리장 등 위생해충(바퀴벌레 등) 방제를 위한 시설개선 및 방역 · 영업장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손씻기 시설 설치비용 ※ 자산취득비에 준하는 지원 불가(예시: 가스렌지 교체)

※ 예산 한도 내 지원업소 수 변경 가능

2.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2026. 8. 24. ~ 2026. 9. 28. (36일간) *기간연장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신청마감일 소인까지)

-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구로보건소 5층 위생과
- 문의전화: 구로보건소 식품위생팀 ☎ 02-860-3233

다. 신청 시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기준이며, 사본은 영업주 도장필요

- ①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② 사업계획서 1부(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3장 이상 첨부)
- ③ 건물주 시설개선 동의서 1부
(토지 및 건물에 변경을 가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④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⑤ 청렴이행서약서 1부
- ⑥ 사업자등록증(신청업소 1부, 본건적업체 1부)
- ⑦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⑧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5년) 1부
- ⑨ 견적서[본건적업체 1부, 타건적업체(비교견적) 1부]

라. 신청마감일: 2026. 9. 28.(월) 18:00 까지

3.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가.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서대로 착공하여야 함

※공고일 및 현장실사 이전에 시설개선을 착공 또는 완료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신청 내용 변경 시 미리 구로구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다.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지원**

(시설개선자금은 개선완료 후 신청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현장 확인 후 지급)

라. 보조금을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마. 보조금을 지원 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예외: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나 지위승계로 동종의 영업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

-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또는 상기 행정처분을 받고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공고일 기준)
- ▶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 ▶ 휴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 ▶ 2024년, 2025년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소

4.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가. 선정시기: 2026. 11월중

나. 선정방법: 서류검토, 현장 확인 및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 후 업소 선정

다. 심사항목 및 기준

항목	배점	선정기준
시설개선 필요성	30	- 시설의 노후화정도 등 시설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필요 및 시급(30점), 필요 또는 시급(20점), 보통(10점)
영업장 면적	15	- 33㎡초과~66㎡이하(15점), 33㎡ 이하(10점), 66㎡초과(5점)
사업장 운영기간	10	- 10년 이상(10점), 5년 이상~10년 이하(7점), 3년 이상~5년 이하(5점), 3년 이하(3점)
연매출액 기준	10	- 1억원 미만(10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7점), 2억원 이상~3억원 미만(5점), 3억원 이상(3점)
인증음식점 해당여부	15	- 위생등급업소 및 모범음식점(15점), 안심식당(10점)
지원 우선순위	10	- 취급메뉴가 한식·일식·중식·경양식 등 식사위주 음식점(10점) - 간단한 안주류(마른안주 등 간단 조리식품)를 취급 업소(5점)
계획 적정성 및 수행능력	10	- 사업주의 사업계획 내용 적합·적정성 (0~5점) - 사업주의 시설개선 의지(능력: 자부담 확보률) (0~5점)

라. 결정안내: 개별 통보

5. 시설개선 사업 수행

가.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선정결과 통지를 받은 후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영업자) 직접 사업수행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신청
나.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 받은 후 수행

6. 보조금 지급 신청

가.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 서류(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 ①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 ②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완료보고서(개선 전·후 사진 포함) 1부
- ③ 대금 지불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내역서 불가
- ④ 통장(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사본 1부

나. 보조금 지급

- 시설개선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류 검토, 신청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현장 확인하여 지급

☐ 문의전화 :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 (☎02-860-3233)